

●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-028호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3월 12일
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
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

1.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고시 목록

구분	기준명	타겟 인증
제정	태양광·열(PVT) 복합모듈(무창형)	국가표준(KS)

2. 제정 사유

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

3. 주요내용

○ 태양광·열(PVT) 복합모듈(무창형)

- 시험 방법 : 구조 및 겉모양, 내압시험(정압누설), 고온저항, 외부 열충격시험, 내부 열충격시험, 빗물침투시험, 해체검사, 최대출력 결정시험, 절연시험, 옥외노출 시험, 열점 내구성 시험, UV 전처리 시험, 온도사이클 시험, 습도-동결 시험, 고온고습 시험, 단자강도 시험, 습윤 누설전류 시험, 기계적 하중 시험, 우박시험, 바이패스다이오드시험, 염수분무 시험, 표시 사항

※ 적합성 인증 기준(안)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(www.motie.go.kr)의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

4.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

- 인증 신청 후,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, 제14조에 의한 적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, 제15조에 의한 인증심사를 거쳤으며, 제13조제3항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서 정한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예정

부칙

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. 끝.